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95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엄태영 · 안철수 · 배준영
김상훈 · 권영진 · 박충권
이종배 · 신성범 · 윤한홍
서천호 · 이만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절차와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조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신설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을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제23조제4항에”를 “제23조제5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등으로 <u>지역중소기업의 생산이나 판매 활동이 전국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한 경우</u>	2. ----- ----- ---- <u>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u>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u>

③ ~ ⑥ (생 략)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생 략)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 단계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및 경영환경의 악화 상황 등 조사 4.·5. (생 략) ④ ~ ⑥ (생 략)	<u>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제5항에----- ----- ----- -- 4.·5.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